

태안해양경찰서 신축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태안해양경찰서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태안해양경찰서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업명: 태안해양경찰서 신축사업

나. 위치: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일원(장산리 286-4)

다. 사업량: 연면적 7,800m² 지상 4층, 지하 1층

라. 사업기간: '24. 12. ~ '28. 12.

마.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태안해양경찰서(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2. 보상대상: 총 2,623m²

가. 1)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74-35(장산리 산 122-1) 면적 18,487m²

중 일부 1,135m²의 토지 및 지장물건

2)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장산리 산 123) 면적 1,488m²의 토지 및 지장물건

※ “편입물건 조서(별지)” 등 붙임참고

나. 편입토지상에 소재하는 지장물건 등 일체를 포함하며, 본 공고 이후에 식재되는 수목이나 영농행위, 설치하는 지장물건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방법: 열람 기간 중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열람기간: '25. 3. 11. ~ 3. 25.(15일간)

다. 열람장소: 태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계(☎041-950-2219)

라. 열람사항

1) 토지 및 물건 등의 세부편입 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마. 이의신청: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사업시행자(태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계)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2025년 12월 이후 예정이며,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통지 예정)

5. 보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

가. 보상절차

① 보상계획 열람공고, ②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③보상협의요청, ④ 협의 성립 시(계약체결), ⑤ 소유권 이전, ⑥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사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 소유권 이전처리

나. 보상방법

- 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방법으로 전액 현금지급(단, 압류 및 근저당권 등 사권 설정 해제 후 계약 체결 원칙)

6. 보상금 산정 방법

-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3인(또는 2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액을 산정(결정)하고, 개별 통지(보상 협의 요청)합니다.

7.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②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의 추천 방법은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해야 하고, 감정평가업자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편입 토지(물건)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의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 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 보상(계획)에 대한 문의 및 기타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계 (전화번호 : 041-950-2219, FAX: 041-950-2916)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첨]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사업명: 태안해양경찰서 신축사업
- 추천 감정평가업체:
- 추천일: 2025.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 (m ²)	토지소유자		날인 (서명)	전화 번호
				주소	성명		
1							
2							
3							
4							
5							